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5-10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31417 납세의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	2022. 11. 1.
판 결 선 고	2022.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시장(이하 '피고'라 한다)이 2021. 12. 13. 원고에게 한 지방세[주민세(양도소득) 등 17,045,860원] 결손처분 안내에 관한, 원고의 지방세 납부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5-10

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9. 16. 원고에게 양도소득 및 종합소득에 관하여 총 12,457,940원의 주민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 12. 10.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4. 원고가 행방불명 상태이므로 위 체납 주민세(양도소득, 이하 '이 사건 주민세'라 한다)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2013. 5. 6.부터 2021. 12. 13.까지 16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주민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이 되어 있으므로 이를 납부할 것을 안내하였다.

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는 2020. 9. 14. 폐차로 인하여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2. 12. 4. 원고가 체납한 이 사건 주민세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결손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09. 12. 10. 압류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2013.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5-10

3. 15. 압류해제 후 재차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민세의 징수권은 2018. 3. 15.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민세 납부의무는 소멸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21. 12. 13. 원고에게 이 사건 주민세를 납부하라고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민세의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9. 12. 10. 이 사건 주민세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압류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가 2020. 9. 14. 폐차되기 전가지 위 압류가 해제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로 인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 전까지 중단되므로, 이 사건 주민세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민세에 대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민세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결손처분으로 인한 납부의무 소멸 여부에 대한 판단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1호는 "결손처분이 된 때"에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규정하였다가 위 개정으로 결손처분을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하였다.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항은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5-10

다고 규정하였다가, 위와 같이 개정된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항은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지방세의 결손처분 취소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개정된 내용은 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2항과 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제정된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2항으로 조문 위치만 바뀌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의 개정 연혁에 따르면,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물론 현행 지방세징수법 하에서도,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국세의 결손처분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사유가 아니라 체납처분을 종료하는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다(대법원 2019. 8. 9. 선고 2018다272407 판결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2. 12. 4. 이 사건 주민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어도 원고의 이 사건 주민세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주민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1)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는 지방세, 가산금 등의 납부의무는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9조 제1항은 지방세, 가산금 등에 대한 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40조는 위 징수권의 시효는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고, 중단된 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다(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

2)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체납자 징수독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5-10

려에 '2013. 3. 15. 압류해제: 일괄 압류해제'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2009. 12. 10.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이 기재된 사실, 위 자동차등록원부에 위 2013. 3. 15.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폐차 당시인 2020. 9. 14.까지 압류가 해제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013. 3. 15.자 일괄 압류해제는 이 사건 자동차의 압류해제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이 사건 자동차의 압류는 2020. 9. 14.까지 해제됨이 없이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주민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자동차의 압류가 이루어진 위 2009. 12. 10.부터 압류가 해제된 위 2020. 9. 14.까지 중단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민세에 대한 징수권에 대하여 2018. 3. 15.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 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5-10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3.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 구 지방세기본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제9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5-10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